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6
----------	-----------

제안년월일 : 1998년 4월 2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민태승

1. 수정이유

-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판단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중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의 사용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비로 함. (안제4조 제1항 제2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비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기금의용도) ① 기금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 용하지 못한다. 1. 생 략 2.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인 정하는 사업비 ② 생 략	제4조(기금의용도) 1. 원안과 같음 2. 기타 <u>시장의</u> 재난의 예방을 위 하여 인정하는 사업비 ② 원안과 같음	